

국 • 내 • 입 • 법 • 의 • 견 • 조 • 사

제 7 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1993. 4.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2 · 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이준우

선임연구원 최성근

연구원 배승희

목 차

제1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I. 문제의 소재	7
II. 각계의 의견	8
1. 자금·금융의 원활화	8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12
3. 거래의 공정화·활성화	15
4. 경영합리화	19
5. 행정지원·규제의 적정화	27
6. 정책의 종합화·차별화	35
III.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40
1. 각계 의견의 정리	40
2. 각계 의견에 대한 평가	44
IV. 입법방향	46

제2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55
1. 최근입법의견 목록	56
2. 최근입법의견 요지	58
II. 최신법령 목록	74

제 1 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I. 문제의 소재

한국경제는 현재 국내적으로는 내수의 침체와 더불어 설비투자가 부진한 한편 국제적으로는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국내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특히 자생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속속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태는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그 경제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이나 기술은 물론이고 거래의 기회나 공정성의 측면에서 불리한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인 약자 보호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현행 법제상의 중소기업 보호를 '경제의 활성화' 내지 '국제경쟁력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① 현행 중소기업법제를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최근 수년간 국내의 신문, 전문지, 보고서 등에 제시되었던 각계의 입법의견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자금·기술·인력·정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활성화 내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신규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존 법령을 종합적·개별적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및 직접적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국 후속적인 입법조치를 필요로 하는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②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업계·정부관계기관·학계 등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시한 주요 의견을, 중소기업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1)자금·금융의 원활화, (2)산업구조의 고도화, (3)거래의 공정화·활성화, (4)경영의 합리화, (5)행정지원·규제의 적정화, (6)정책

* 이 조사보고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팀(전재경, 수석연구원, 김명연 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수행한 것임

의 차별화·종합화의 6가지 쟁점사항별로 살펴본 후, 이를 정리·분석하고 나아가 향후의 바람직한 입법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Ⅱ. 각계의 의견

1. 자금·금융의 원활화

1) 금 융

(1) 업 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금융권의 이중구조 해소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나,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악화될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별도로 강구되어야 한다.
- ② 산업정책 지원기능이 취약한 제2금융권으로 수신금융이 집중되고 있는 바, 이를 막기 위하여 은행과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 격차를 일본수준인 0.2%수준으로 축소하고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변칙적 예금흡수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지도비율을 의무비율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을 은행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산정기준에 외화대출금을 포함시키고 특수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도 의무대출 적용기관으로 하여야 하며, 의무대출산출방식을 기말잔액기준에서 평잔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중소기업의 의무대출 비율을 확대하고 산출기준과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④ 창업투자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및 팩토링·리스 지원제를 허용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연구실, 『새정부에 대한 정책제언 :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당면과제와 정책건의』, 1993.3., 8~10, 18면)(이하 '중앙회전의93'으로 약한다).

- 김청성(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연구실장)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의무대출률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지원비율이 낮은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특수금융기관도 포함시키고, 총대출규모에 외자대출도 집계대상에 넣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액 산정기준도 현재 미잔액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편법대출에 의한 의무대출비율의 부풀리기가 가능하므로 이를 평잔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부도예방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여 경제환경변화가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할 경우 재고금융지원 등 긴급자금을 확보,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이자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경영현황과 자금난 해소대책”, 『전경련』, 1993년 3월호, 18면).
- 기타 의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재할인을 절대로 해주지 않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의무대출비율을 적어도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한국경제, 1993.1.14., 9면).

(2) 정부관계기관

- 경제기획원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로 경영환경을 개선키 위해 대기업이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 보증을 서주는 연계보증의 활성화를 통한 신용보증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중소기업계열화촉진협의회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조선, 1993.2.14., 6면).

(3) 학 계

- 강철규(서울시립대 교수)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이 일반 시중은행 보다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출자자를 제한하고 정부의 1/2이상 출자의무를 규정한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정하여 공모방식허용 등으로 자본금을 증액시켜 명실공히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처로서 그 역할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다(중소기업은행 주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1.6.26.; 중소기업신문, 1991.7.1., 5면).

(4) 기 타

- 이동욱(언론인) 중소기업의 제품판매대금을 수금할 수 있도록 판매한 상품을 담보로 한 상업어음을 할인해 주는 '유통금융'을 과감히 실시하여야 한다(동아, 1993.2.23., 9면).
- 국민은행 조사부 중소기업은 금융긴축시에 운전자금 조달곤란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긴축시에 긴축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액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한국의 소규모기업』, 1990, 33~34면).
- 서상록(국민가계경제연구소장) 중소기업금융은 산업금융과 정책금융으로 구분해야 하며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자금의 지원은 재정자금에 의해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세금감면 등의 중소기업금융 유도책이 강구돼야 한다. 사내저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금융원활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은행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의 대출비율은 상향 조정하고 지방은행에 중소기업관련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지원한다. 의무대출 비율의 준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이 계열사 중소기업의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금지하며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 ② 전문금융기관 :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자본금을 증자해 대출여력을 늘리고 중소기업금융채권을 발행한다. 건실한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을 소규모·지역중소기업의 전문금융기관화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정보실을 공동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한다. 보험·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지원 유인책을 강구하고 리스사

의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 ③ 신용보증제도 : 새로운 신용보증제도의 개발과 활용이 있어야 한다. 기술신용보증제도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심사인력을 양성하고 과다한 대위변제 감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주최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방안』 강연회 주제발표문, 1992.3.13.; 중소기업신문, 1992.3.16., 4면).

2) 자본시장

- 증권업계 50대계열그룹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의무지급보증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대그룹계열사간에 채권발행물량을 맞교환하는 바터를 규제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현행 발행금액의 1.5%인 보증수수료를 이원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기업에 대한 '보증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 동일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25%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한국경제, 1993. 1.14., 9면).
- 조경완(삼경기전 부장) 보증없이 신용만으로 발행하는 무보증회사채를 중소기업들이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경향, 1993.1.10., 1면).
- 박제상(국회의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국가가 그 채무를 보증한 뒤에 특별지원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동아, 1993.2.12., 4면).
- 윤희상(동아일보기자) 중소기업들에게 3년만기의 장기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회사채발행시장은 대기업들의 '차환발행'을 대거 허용함으로써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다(동아, 1993.1.9., 2면).
- 기타 의견 현재 32개 증권사중 8개사만이 할 수 있는 회사채지급보증취급 증권사를 늘려야 한다 (경향, 1993.1.10., 2면).
- 3) 공제제도
- 이상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금관리부) 중소기업협동조합증

양회가 운용하고 있는 공제사업기금의 초과운용수익에 대하여 기금에서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금의 법인세 절감을 도모하고, 중앙회 고유의 기능을 활성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 '기금'관련조항인 제3조의 2에 지급준비금의 설정에 관한 근거조문 신설과 함께 제87조의 6(기금의 사용)에 초과운용수익의 전용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법인세감면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진흥논집』, 1991, 210면).

- 중소기업신문 사설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구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기업자의 상호부조정신에 입각한 소기업 공제제도를 시급히 도입, 실시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6.15., 2면).

2.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1) 시설근대화

○ 상공부 중소기업국

- ① 대기업과 도급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를 모기업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하에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공동사업계획제도를 현행 계열화 '품목별 운용체제'에서 자동화지원 등 '기능별 운용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② 중소기업 자동화엔지니어링업체의 육성을 위해 이들 관련 업종을 일반적인 서비스업종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제조업'으로 인정하고 동업종의 중소기업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중소제조업 관련 업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③ 지방중소기업의 자동화추진을 위해서 '자동화협력대학'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중소기업신문, 1992.1.27., 6면).

2) 전문화 · 계열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도권내 개발유도지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업종별전문화단지'를 조성한다(중앙회건의93, 18면).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중간재 · 자본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층적 전문계열화'의 촉진에 중점을 두고서 계열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차 수급기업'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실현을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현재 일반적 도급거래 형태인 '폐쇄적계열'구조를 '개방적계열'구조로 전환시켜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계열화가 진전되어 있지 않은 소기업이 위주인 '2 · 3차 수급기업'에 대한 계열화시책의 강화에도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1차 수급기업에 대해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21~22면).

3) 사업분야확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1년이하의 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상의 처벌조항을 크게 강화하여 적발됐을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것만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길이다(한겨례, 1993.1.28., 1면).
- ②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양수기업에 대해 구조조정기금중 사업이양자금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금리상 우대뿐만 아니라 소득세 · 법인세 등 조세감면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6~17면).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고유업종지정시 분명한 한시성의 도입과 함께 지정절차의 공정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선 한시성의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규정을 중소기업사업조정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학계, 연구기관, 업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고유업종지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정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해 가는 과정을 보다 중시하여 한다. 또한 고유업종지정제도의 단계적 축소운영은 사업조정제도의 보강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산업연구원 주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 1992.7.14.; 중소기업신문, 1992.7.20., 4면).

4) 사업전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및 부문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8면).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성장둔화업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건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성장둔화업종 내지 성장유망업종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강화하고, 스스로 사업전환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손쉽게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교류의 활성화, 금융·조세지원 및 지도사업 등을 통한 지원시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2차 기계류, 품목·소재국산화개발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일본과의 국제분업구조상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이전될 가능성이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개발품목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산업연구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1992, 21~23면;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경영과 기술』, 1993년 1·2월호, 20면).
- 박대호(경향신문기자) 외자도입법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종전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기업들은 참여상의 형평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경향, 1993.1.22., 2면).

3. 거래의 공정화·활성화

1) 도급거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경련이 공동으로 기업자율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상황 등에 대해 경기적으로 조사하고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불공정사례를 적발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자위남용방지를 위한 조정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6면).
- 강재완(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전문이사)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간계약의 일정규모 이상의 물량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가격결정에 있어 모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제3자결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7.29., 5면).
- 성광원(법제처 법제관)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한 법률로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양법률은 규율하는 사업의 범위가 대동소이하고 모기업(원사업자)이나 수급기업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Mechanism 역시 유사하다. 따라서 양법률을 통합조정하여 분쟁기관을 통일시킴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절차의 신속화로 분쟁조정을 신속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질서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경제정의실현을 위한 법제개혁방안" 토론회,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법제세미나, 1993. 4.28).
- 이성욱(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공정한 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중소기업단체에 도급거래 실태 및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이 기구가 모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산업구조조정기의 중소기업 생존전략』 세미나,

1992.11. 24. : 중소기업신문, 1992.11.30., 5면).

- 조성대(한국소비자보호원 상임이사)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계열화촉진법이 이원화되어 있어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납품대금지급은 60일이내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1. 3., 2면).
- 이건호(변호사)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대금지급기일을 단축시키기 위해 60일 이상 어음에 대해 할인률보다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시켜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1.3., 2면).

2) 유통기구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중소기업 종합물류센터로서의 공동집배송단지는 배송권역이 반경 15km이내가 되어야 하지만 현재 수도권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적정부지의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통한 적지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규제완화 등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종합물류센터건립을 위한 금융·세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중앙회건의93, 19~20면).
- ② 상공부내 유통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영세 유통업계가 장부기장능력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복식부기 기장 의무대상을 현행 연간 매출액 2억 5천만원에서 5억원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7.6., 7면).

○ 어윤배(충실대 교수) 유통업을 비롯 기타 서비스업분야에의 중소기업 진출과 존립기반 확보에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시장의 판로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균형있게 점유할 때 비로소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민주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판매시장을 독차지한 대기업: 중소기업, 내수시장 설 자리가 없다", 『경영기술』, 1989년 10월호, 20면).

3) 수출·수입

(1) 업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미화 1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시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제를 폐지하고, 무역업허가 면제범위를 현행 1만달러에서 3만달러이하로 확대하며, 관세환급관리체제도 현행 건별, 품목별 관리체제에서 기업별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소액수출간이정액환급 대상을 현행 연간 환급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는 등 소액수출 특례제도를 강화하고 또한 현행 미화 5만달러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을 미화 20만달러까지로 확대 운용하고, 수출입력 2년이상, 연간 수출실적 미화 30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이중 한가지만 충족되면 가능하도록 수출신용보증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무역관련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②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은행과 환거래계약 미체결지역권 수출분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 수출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조합 중심의 사절단 파견시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권역별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12·13면).

○ 김정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부 과장)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세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별상각제도, 해외사업소득공제, 해외접대비손금인정제도 등)의 경우 불공정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지 적된 반면 간접세지원(부가가치세법상의 지원, 특별소비세법상의 지 원, 관세법상의 지원 등) 및 관세지원(환급제도)의 경우 공정성은 확 보되었으나 수출지원효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금융지원

(무역금융, 연불수출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출보험)의 경우 미국측의 공정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미흡하지만 GATT협정상의 공정성요건과 모순되지 않으며 수출지원효과도 큰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세환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신속간편한 환급절차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의 '전별·품목별 관세' 방법을 지양하고 '기업별 관리' 체제로 조속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무역금융의 축소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무역어음 활용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어음 최소발행액에 미달하는 수개업체의 소액수출자들이 공동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변형된 표지어음' 제도의 도입 검토와 함께 중소기업 무역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허용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영세수출기업의 담보력 보완을 위한 수출신용보증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 조세감면을 통한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위주의 R&D자금지원 확충과 구조조정 등을 촉진하는 쪽으로 자금지원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일정액 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한 획기적인 절차간소화를 위해 '잔액기준 수출특례' 제도의 도입방안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중소기업신문, 1992.9.21., 3면).

(2) 정부관계기관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종료에 따른 특허·유통·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관련하여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부문의 개방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 직권조사 및 피해구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25면).
- 김은상(한국무역협회 사무이사)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설비금융의 한은 재할인비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하여는 1988년 3월에,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88년 10월에 폐

지된 '관세징수유예' 제도를 중소기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우리나라 무역환경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 1990년 7월호, 15~17면).

4) 구매촉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구매의 확대) 제1항의 '.....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를 '..... 체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기피를 법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회계법 제76조(계약의 방법)에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를 신설하고, 동시행령 104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신설 보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기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제22조 2항)에 정부재투자기관도 포함되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생산시설을 갖추지 않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와 일반수의계약을 억제하여야 한다.
- ② 부품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경제성이 있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체제를 구축하여 부품사용업체와 수급기업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에 대해서는 조립업체로 하여금 우선 구매토록 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4, 18면).

○ 중소기업신문 사설 정부는 개발부품의 국내수요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외국기업의 덤펑공세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로 적극 대응하여 개발기술 및 부품의 국내보호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7.20., 2면).

4. 경영합리화

1) 경영안정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도산방지를 위해 사전 신고업체에 대한 구제금 융자지원제를 도입하고 상환도래분 중소기업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도산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연월차휴가일수를 현행 8일에서 3일로 하향조정하고,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을 평균임금의 70%에서 60%로, 법정수당 할증지급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하여야 한다.
- ③ 이와 함께 '87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개월분 임금채권을 최우선 변제토록 한 이후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 이용시 담보가액에서 3개월분 임금채권이 사전공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 동조항을 삭제하고 체불임금문제는 임금안정기금설치 등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④ 법정공휴일이 연 17일로 대만(22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경쟁국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연월차휴가가 대부분 수당지급으로 관행화되어 인건비 증대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을 축소 조정하여야 한다.
- ⑤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정보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⑥ 복수노조설립 허용시 지지를 확보를 위한 선명성경쟁 등 노·노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의 빈발과 과격분규화의 우려가 있고 또 직종·직급별 노조설립으로 단체협상기준을 설정하기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노조의 정치참여도 계속 금지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9~11면).

○ 한국경제신문 해설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업어음 할인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한국경제, 1993.1.14., 9면).

2) 기술개발

(1) 업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각종 연금·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기술투자기금으로 조성하여 자동화설비, 소재·부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무담보신용으로 중장기 저리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기계류, 부품소재를 개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를 도입하는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반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투자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대체 및 부품국산화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중 계열화촉진자금을 조성하고 수입부품의 국산화업무개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7면).
- ②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기술개발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8면).

○ 박기점(주.우영 대표) 수입부품 국산화 업체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주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7.1., 5면).

○ 중소기업신문 사설 계열화예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에 대하여 국산개발단계부터 모·수급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병역특례제도확대, 주택분양우선권부여 등 전문기술인력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7.20., 2면).

(2) 정부관계기관

○ 김세현(산업연구원 연구원)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위해서는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상공부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협행제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중소기업신

문, 1991.12.16., 5면).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력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①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상의 차등화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는 기술유형별·개발단계별로 차등 지원하고,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우대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술개발지원체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차등세율 적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② 기술개발촉진체계 구축

중소기업간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 등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전용 첨단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고급장비의 공동이용·기술정보의 상호이용 및 이업종교류 등을 확산시키는 한편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 1992, 18~20면).

(3) 학 계

- 류동길(승설대 중소기업대학원장) 수입하던 부품을 중소기업이 개발했다 해도 이를 검사하고 공인하는 기관이 없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이들 물품의 구입을 위험부담 등을 이유로 기피하게 된다(한겨레, 1993.1.17., 10면).

(4) 기 타

- 장윤영(경향신문기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양도·이전을 위한 기술알선 및 사후관리제도가 시급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산·학·연합동연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경향, 1993.1.18., 1~2면).

3) 품질향상 · 창업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융자 · 팩토링 및 리스를 협용하고, 투자제한업종의 범위를 축소하고 '업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투자회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중앙회건의 93. 18면).
- 김정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부장)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창업에만 중점이 두어 졌을 뿐 창업이후 후속단계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 즉, 창업한 기업들은 창업이후 자금난, 기술력부족, 정보부족, 판로애로로 고전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창업기업 대부분이 상시종업원 20명미만의 소기업인데 이들 소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동아, 1993.2.4., 2면).
- 한정화(한양대 교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정책의 초점은 우선적으로 이들 기업의 시장진입시 진입장벽 극복에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초기의 생존률을 높이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수년간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의 방향이 직접 지원과 애로요인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 왔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원환경의 개선 및 하부구조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방안"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중소기업문제의 진단과 대책』, 1993.1.8.).

4) 인력난해소

(1) 업 계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특수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분야는 20개 법령에 26종에 이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법정 의무고용인원이 많은 곳은 21.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의무고용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법률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의무고용규정을 통폐합해 유사의무고용의 상호대체를 인정하고, 외부전문기관의 위탁관리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동아, 1993.3.15., 7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근로자 퇴직시에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근로자의 '퇴직예고제' 및 부당 스카웃 업체에 대한 '스카웃부담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 ②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연수목적 사증발급대상자를 외국에 투자했거나 기술을 제공한 업체 및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한 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제도이용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50%이상인 업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정업종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종,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생산기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수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외국인연수제도의 확대를 통하여 인력수급을 원활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불법취업 및 소개알선 등의 비리예방을 위해 외국인연수업무 취급기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운영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된다.
- ③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에 대해 8시간, 특정주에 대해 4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변형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주기준 근로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는 규정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 주에 대해 12시간을 초과해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④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부문간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업안

정제도의 개편도 시급한 과제이다.

- ⑤ 중소기업 분야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중소기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장을 제공하며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연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 93. 8. 11. 21면; 중소기업신문, 1992.2.24., 1면).
- 곽병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이사) 제조업 근로자의 소득 세율은 대폭 인하하고 유통업소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여 서비스업에로의 인력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2.24., 4면).
- 김진태(공예연합회 회장) 현재의 불법적인 외국인 취업을 양성화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취업창구를 일원화하여야 하며, 현재의 병역특례제도와 해외인력연수제도를 보완하여 전체 중소업체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중소기업의 인력난 어떻게 풀것인가』 학술심포지엄 토론요지, 1992.5.11.; 중소기업신문, 1992. 5.18., 3면).
- 문여상(태풍화학 전문이사) 중소기업이 채용해야 하는 법정의무고 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인력관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자격기준의 대폭적인 완화가 요구된다(중소기업신문, 1992.11. 30., 5면).
- 최동규(임금·생산성연구센터 소장) 근로시간이 줄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인 근무시간제,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산·학·연 협동체제에 의한 인력 개발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연수제도와 병역특례제도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해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중소기업의 인력난 어떻게 풀 것인가』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2.5.11.; 중소기업신문, 1992.5.18., 3면).
- 한기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책연구실 수석연구원) 병역특례

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혜대상업체의 확대, 의무복무기간의 단축, 직업훈련절차의 간소화, 무자격자의 자격취득방법의 완화 및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6.29., 4면).

(2) 정부관계기관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퇴직인재활용제도(Talent Pool)를 도입하고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 직업훈련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정보망 구축 및 중계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1992, 18~20면).
- 유길상(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고용보험제를 도입하여 사업내 직업훈련을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락성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금융규제를 강화하여 이들 산업의 영업수익률이 제조업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임금복지의 불균형현상을 해소하여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중소기업의 인력난 어떻게 풀것인가』 학술심포지엄 토론회, 1992.5.11.; 중소기업신문, 1992.5.18., 3면).
- 이성욱(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기술대학을 설립하여 기술·기능인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산업구조조정기의 중소기업 생존전략』 학술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2.11.24.; 중소기업신문, 1992.11.30., 5면)

(3) 학계

- 강철규(시립대 교수)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중소기업의 필요인력을 양성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전략을 항구적으로 연구하는 중소기업전문대학이 필요하다. 이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학비지원, 병역특례 등을 주되 일정기간 이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중소기업은행 주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1.6.26.; 중소기업신문, 1991.7.1., 5면).

(4) 기타

○ 이철호(중앙일보기자) 의무고용비율은 중소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최근 행정규제민간연구센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한데 반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8~17%의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을 크게 완화시켜야 한다(중앙, 1993.1.12., 5면).

5. 행정지원·규제의 적정화

1) 행정규제완화

(1) 업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정부의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즉, 기업설립, 공장입지와 건축, 기술도입 등과 같은 창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와 감독 위주의 행정 관리체제에서 지도·계몽체제로 전환하여 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7면).
- ② 현행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자산총액을 4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액규모에 비해 기계장치비 등의 비중이 높은 장치산업의 경우, 회계감사에 대한 기본보수액기준으로 적용 토록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수액에 차등적용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0면).
- ③ 실제 창업기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의 지원을 받은 업체가 적은 것은 지원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지도, 감독, 승인, 신고 등의 행정규제가 여전히 기업활동

의 장애요소를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인허가제는 민원인의 사정이나 여건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의 연계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기업 규제위주의 실효성 없는 제도와 절차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8.19., 1면).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정부규제의 문제점으로 규제의 비현실성(46.5%), 중복규제에 따른 부담(23.1%), 시장자율기능침해(22.2%) 등이 주로 꼽혔다. 또한 기업활동중 정부규제가 가장 심한 부분은 금융·자금부분이며, 신규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부분, 조세 및 세무행정, 토지건설부분 그리고 수출입부분 등에서도 적정수준 이상의 정부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규제 완화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이 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속을 못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중앙, 1993.1.12., 5면; 동아, 1993.2.23., 2면; 조선, 1993.2.28., 7면).
- 행정규제완화연구센타 행정규제완화연구센타가 건의한 6백 46건의 건의사항중 3백 93건을 정부가 수용하였지만 정부가 수용한 내용들은 서류·절차의 간소화와 낡은 관행의 폐지가 대부분이며 정작 인·허가규정이나 가격기능의 회복 및 금융규제완화방안은 거의 수용되지 아니하였다(중앙, 1993.1.12., 5면).
- 기타 의견
 - ① 기업의 창업 때 백여개 절차에 이르는 인·허가사항 및 수출을 비롯한 국내외 영업에 드는 부대비용 등이 크게 없어져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수 있다(조선, 1993.2.28., 7면).
 - ② 중소기업은 기업을 공개하기가 바늘구멍을 지나기만큼 어렵다. 부도를 막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만 공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중소기업단체, 업종단체 등의 의견을 참고로 융통성 있는 선별책이 기대된다(경향, 1993.2.14., 2면).

(2) 정부관계기관

- 배정식(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과장) 시장기능이 완전할 수 없는 한 정부규제는 필요하며, 환경·보건·의료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 및 경제력 집중완화,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강화하여야 한다(한겨레, 1993.1.21., 2면).
- 염동철(무역협회 무역진흥과장) 우리의 무역관리제도는 연간 4백 만건에 달하는 모든 수출·수입 승인에 대해 건별로 사전·사후 확인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한겨레, 1993.1.21., 1면).

(3) 학계

- 이성순(성균관대 교수)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규제는 그대로 둔채 절차만 간소화하는 민원처리수준의 단편적·국부적 접근이 많았다. 따라서 시장기능의 실태에 따른 정부개입의 타당성여부 등 규제의 본질과 존폐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중앙, 1993.1.13., 5면).
- 최병선(서울대 교수) 규제완화가 반드시 만능은 아니며 환경·소비자보호·근로자보호·성적 차별철폐와 같은 사회적 규제는 공익을 위해 합리적 조건하에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화되어야 할 규제는 행정절차규제나 경제적 규제(신규사업 진입제한, 인허가, 가격·물량제한, 사업영역제한)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중앙, 1993.1.13., 5면).

(4) 기타

- 김 일(중앙일보기자) 규제완화를 힘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사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완화 후 있을 수 있는 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제도를 강화하며, 국제화와 관련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앞서 국내

기업간에 시장경쟁을 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조차 반대하는 민간경제주체에 대한 시민단체의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중앙, 1993.1.13., 5면).

- 이철호(중앙일보기자)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행정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자율성이나 시장경제보다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치게 의지하였고 입법기관과 정치권의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기관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만연되었다. 부처간 이기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을 제때 고치지 않아 규제로 변한 것이 많다. '80년에 제정된 법률과 시행령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몸에 맞지 않는 웃으로 기업이 고통받는가 하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별금형은 "차라리 별금을 물고 말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만용까지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중앙, 1993.1.12., 5면).

2) 세제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경쟁력향상을 위한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중앙회 전의 93, 8면).
- ② 사무관리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정보처리 담당요원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요구된다. 인사·급여관리 등 사무관리 자동화를 위한 시설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관리자동화 시설투자도 생산성향상 시설투자로 보아 소득공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공제해 주는 제도에 정보처리기사 2급 이상의 전산담당요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공제해 줄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정보처리자격증 소지자의 채용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중소제조업의 정보화 실태와 추진방향", 『중소기업 News Letter(종합편)』, 1992, 158~159면).

③ 중소기업이 경영외적으로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평균매출액 대비 0.81%에 달해 순수연구개발투자비 비중 0.19%의 4배를 넘고 있다. 준조세부담은 지방중소기업에게는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이다(경향, 1993.1.27., 2면).

○ 기타 의견

① 산업재해보험료율을 업체별로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3.30., 1면).

② 세정합리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세무신고절차와 서류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요구를 없앤다. 부당과세처분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원세제활용업체에 대해 서면조사결정률 등 각종 세정집행에서 차등을 둔다. 기업경영능력을 인정받는 회사에는 세제지원을 강화한다(경향, 1993.1.28., 2면).

3) 환경규제의 적정화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현재의 공장건물이 용도를 위반한 건물이라도 조건부 공해배출시설을 설치토록 허용하는 등 조건부 등록공장이 공장입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재조치를 면제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6면)

○ 흥일선(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경기지회장) 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취급품목에 따라 환경관리기사, 유해물질관리취급자, 독극물취급자 등 일정자격취득자나 일정학력이상의 인력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에는 일정자격취득자가 상주해야 할 만큼 업무량이 많지 않고 자격취득자에 대한 급여는 생산직사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며, 자격취득자들이 중소기업 취업기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의 자격취득자의무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이 밖에 산업쓰레기수거대책 수립,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확대,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완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7.6., 6면)

○ 박대호(경향신문기자) 지난 해부터 중소기업계에서는 환경관련 비

용부담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일선 환경관련 기관에 대한 지출이 적지 않은 마당에 환경부담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정책집행이 요구된다(경향, 1993.1. 27., 2면).

○ 기타 의견

- ① 중소기업이 환경보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12.14., 7면).
- ② 소량폐수배출업체의 경우는 종말처리비용부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3.30., 1면).

4) 공장입지확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중소기업 특별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장입지 수요면적을 감안하여 공장입지자유지대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장입지 자유지대내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의제처리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 93, 15면).
- ② 조건부 등록공장이 공장입지를 확보할 때까지 이전명령을 유보하며 수도권내의 개발유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업종별 전문화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 93, 16면).

○ 오태규(대영화학 대표) 국가가 영세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위해 대 규모의 중소기업 영구임대공단을 건설하게 되면 중소기업 창업기업의 자금난, 공장입지난 및 공장인허가난 등 80%의 애로사항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한국중소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상공부가 찬성을 하더라도 공장부지 인·허가 등 절차사항을 관할하는 건설부가 반대하고 있다(중소기업신문, 1992.1.20., 5면).

○ 기타 의견 특정 부품의 협동화단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용지확

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3.30., 1면).

5) 행정기구의 정비

(1) 업 계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민간합동규제제도 개선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야 한다(한겨레, 1993.1.21., 2면).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① 전각료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체장, 대·중소기업대표가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의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정례화하여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하며,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결과 및 경영애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공부에 시책 분야별로 중소기업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담당 차관보를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중소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각 시도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는 등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행정기구를 확충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9~21면).
- ② 업계가 제기한 고충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점검 및 감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업고충심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일선창구직원의 업소방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이 상설기구가 규정의 남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5면).
- ③ 정부, 업계, 학계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대통령직속의 중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가 각종 중기대책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부도방지와 경영안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한국경제, 1993.1.13., 10면).

○ 꽈병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이사) 우리나라 정부조직중에

는 아직 소기업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에도 아직 소기업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소기업을 종합육성하자면 소기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어 소기업문제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가야 한다(“소기업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 1990년 10월호, 16면).

- 조기정(광주전남지역 협동조합이사장협의회 회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행정기구를 확충하여야 한다. 즉, 직할시장·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 직속으로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심의회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8.10., 2면).

(2) 정부관계기관

- 김재홍(한국경제연구원) 규제도입에 따른 사전심사와 사후감독을 위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규제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중앙, 1993.1.13., 5면).

(3) 학 계

- 강철규(시립대 교수) 중소기업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일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중소기업은행 주최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1.6.26.; 중소기업신문, 1991.7.1., 5면).

(4) 기 타

- 국민은행 조사부 현재 중소기업지원시책 추진기관이 상공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한국은행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일괄성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 『한국의 소규모기업』, 1990., 32면).

6. 정책의 종합화·차별화

1) 정책일반

(1) 업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우리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반확충, 기술수준의 향상, 구조고도화 등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향후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7면).
- 양건섭(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법과 구조조정법이 통합되어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5.6., 4면).

(2) 정부관계기관

- 김광경(한국경제정책연구원장)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이 기업규모나 업종에 맞지않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되어 있다. '창업과 그 이후'를 연결하는 현실적 지원육성책이 필요하다(동아, 1993.2.4., 2면).
-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종합지원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한 바, 그 필요성은 첫째, UR이 타결되면 기존의 중소기업관계법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점, 둘째, 대부분의 법이 80년대 초반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세째, 관련 법간의 충복사항이 많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지 못한점, 네째, 89년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종합지원법은 UR의 타결을 고려하고 제도급변에 대한 완충기간을 두기 위하여 2~3년간의 유보·검토 기간을 거쳐 199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종합지원법의 기본방향은 첫

째, 중소기업의 육성을 정부정책의 가장 큰 과제로 천명하여야 하고, 그 대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UR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거나 상계가능보조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은 배제한다. 세째, 종합지원법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령 또는 한시법으로 한다. 네째, 허용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원을 최대한 확충하되,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제일차적 목표로 한다(『UR협상과 한국의 중소기업』, 1992.; 중소기업신문, 1992.1.27., 5면).

- 백낙기(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실장) 중소기업의 범위조정방향을 자산규모 확대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각종 자금지원이 중기업에 집중될 우려도 없지 않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중소기업육성시책을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행정 및 조세 위주로, 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위주'로 수행해 나감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상공부·산업연구원 주최 『중소기업 범위조정』공청회 주제발표문, 1992.1.29.; 중소기업신문, 1992.2.3., 4면).

(3) 학 계

- 박종구(아주대 교수)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한편, 기금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기금운영절차, 여유자금 운용기준, 국회의 감독기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우리나라 정부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경련, 1991; 동아, 1991.4.11., 7면).
- 이윤보(건국대 교수)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서는 도산관련특별보증제도,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제도, 도산방지(경영안정)특별상당실의 설치 및 경영안정특별대부제도 등을 실시·개선하여야 한다("중소기업 경영난의 원인과 대책", 『전경련』, 1993년 3월호, 13면).
- 이진순(충실태 교수)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제1차

적 과제는 중앙관리경제질서를 전면적으로 청산하는 것이다. 특히 관
치금융의 청산, 관제카르텔의 해체, 각종 불필요한 인·허가제도의
철폐 등이 시급하다. 둘째, 엄정한 독과점규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세째, 정부는 외부효과가 큰 직
업훈련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기
반구축에 힘써야 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주최 『중소기업문제
의 진단과 대책』 세미나 중소기업문제, 1993.1.8.).

○ 조동성(서울대 교수)

- ① '물적 자원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자본이 유망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
업이 민간금융부문에서 충당하지 못한 자금을 산업금융정책을 통
해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금융실명제와 금융관행개선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자
금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② '경영환경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을 중
심으로 한 산업차원의 정책[경쟁촉진]과 함께 근로자 복지향상과
노사 협력관계 증진을 중심으로 한 기업차원의 정책[협력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중소기업은행 주최 『중소기업 지원과제에
관한 심포지엄』 주제발표문, 1992.2.17.: 『경영과 기술』, 1992년
11·12월호, 75~77면).

2) 소기업의 육성

(1) 업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
여 체계적 육성대책을 수립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소기업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공단을 조성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9면).

○ 곽병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이사)

- ① 각종 금융기관의 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별도로 신설하여 소기업

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이용편의를 위해 소액의 기업자금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부나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 ② 소기업의 납세편의를 돋기 위해서는 과세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요건만 충족되면 자동감면이 가능하도록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입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③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창업지원요건을 이원화하여 소액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신용보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소기업의 경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진흥』, 1990년 10월호, 15~16면).

○ 양창식(컴퓨터판매업조합 이사장) 소기업은 그 동안 각종 지원시책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다. 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액보증제의 활성화로 소기업 신용보증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책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을 별도로 설정하고, 소기업공제제도도 도입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2.24., 4면).

○ 기타 의견

- ① 영세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는 영업이 곤란하다. 특정지역에서 특정 사업만을 할 수 있도록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중앙, 1993.1.11., 5면).
- ② 작은 부지가 필요한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기업계의 실정에 맞게 제도를 세분하여 현실성을 높이고 수도권의 고질적인 입지난해 소를 위해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단지 외에 장기분할상환공단을 건립하여야 한다(경향, 1993.2.2., 2면).

(2) 학 계

○ 한기춘(한국외국어대 교수) 지역경제는 지역 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발전될 수 있다. 지역소기업공제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소기업육성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중소기업신문, 1991.5.6.,

4면).

- 윤덕현(승실대 교수) 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소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육성필요성에 따라 별도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증대, 소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범위확대, 신용대출확대, 전담 금융기관의 신설, 상호신용금고의 역할확대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높은 하도급의존도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으로서 소기업수급협의체의 조직, 법인화, 재하도급협의체의 구성, 기금조성, 어음재할인 기간연장 등이 필요하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업의 경우 거의가 소기업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소기업 육성정책이 창업지원정책과 연계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국민경제에 있어서 소기업의 역할과 비중”, 『중소기업진흥』, 1990년 10월호, 9~10면).

3)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를 통한 자금지원 확대, 지방특화산업의 육성,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유도 및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중앙회건의93, 19면).
- 조재한(부산서부 금형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지방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지방공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지역특화사업과 애로기업에게 경영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8.10., 2면).
- 김종재(전남대 교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청의 설립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의 실시, 지방대학과의 산학협동체제의 강화, 중소기업의 창업·경영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2.5.25., 4면).

- 한기준(한국외국어대 교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세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고, 각종 인허가업무를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한다(중소기업신문, 1991.5.6., 4면).

4) 부도처리절차의 개선

- 안공혁(경제학박사)

- ① 수표발행인이 부도가 예상되거나 조기 상환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계기관에 부도 발생 이전에 자진신고하고 상환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우수 유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발행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일정한 조치하에서 구속을 상당기간 유예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구속처리여부 판단을 일정기간 유예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불구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② 기업의 정상화 또는 회생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 인정되는 우수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도처리유예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도처리 유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은행의 대출‘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을 활용하는 가칭 ‘부도처리유예담보보증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손실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여 보증기금이 입게 되는 손실의 7-8할을 전보하여 주는 ‘손실보전제도’의 실시를 병행함으로써 부도처리유예제도에 따른 리스크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서강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자료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에 관한 소고』, 1993, 26, 28~29면).

III.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1. 각계 의견의 정리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입법의견들은 구체적인 법안에

관한 제정·개정 의견도 적지 아니하다. 기존 제도나 기구의 보완 못지 않게 새로운 제도나 기구의 창설에 관한 의견들도 많다. 또한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입법사항들이다.

(1) 구체적인 신규법률의 제정에 관한 의견으로는, 우선 ① 자금·금융의 원활화 분야에서 「중소기업부도예방특별조치법(가칭)」 제정안이 있다. 다음으로 ② 협동화·조직화와 관련된 「기술투자기금법(가칭)」 제정안, ③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술투자기본법(가칭)」 제정안, ④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의무고용기본법(가칭)」 제정안, ⑤ 행정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가칭)」 제정안¹⁾, ⑥ 종합정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지원법(가칭)」 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종합지원법(가칭)」 제정안은 '80년대 초반에 제정·개정된 현행 중소기업관계법령들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차피 'UR'타결 이후에는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하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⑦ 소기업의 육성을 주안으로 하는 「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 제정안과 ⑧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 제정안²⁾ 등도 제시되고 있다.

(2) 기존의 법령에 대한 정비방안으로는, 우선 법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방법으로서, 계열화·전문화의 달성이이라는 관점에서 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계열화촉진

1) 1993년 4월 27일 현재 정부와 민자당은 당정회의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 안을 확정짓고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관리자 고용의무기준이 현저히 완화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입지 절대금지지역을 일괄고시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45일이내에 공장설립신청에 관한 사무처리가 종료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가칭)」 안은 1992년 하반기에 민자당 정책토론회와 당정 협의를 거쳤다. 현재 조만간 국회심의에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지방중소기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각 시장·도지사로 하여금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고,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정하는 외에 기술·인력·경영안정·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지원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을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³⁾ 또 전체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경영 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폐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한시법인 후자의 입법취지를 존속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기존 법령에 대한 개별적인 개선의견도 활발하다. 이러한 유형의 의견으로는, ①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을 개정하여 ‘공동사업계획제도’를 ‘기능별체제’로 운영하자는 의견, ②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구매를 의무화시키자는 의견, ③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형량을 강화하자는 의견 등 중소기업과 직접 관련된 법령개정안도 있으나, ④ 자금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공모방식을 허용하자는 의견, ⑤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원활하게 하자는 의견, ⑥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금채권우선변제 규정을 완화시키자는 의견, ⑦ 부정수표단속법을 개정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부도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자는 의견 등 중소기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방안들도 상당수 제시되어 있다.

한편 거시적 안목에서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법적기반의 조성을 촉구하는 의견도 상당수 제시되고 있다. 중앙관리경제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방안 그리고 금융의 ‘이중구조’를 해소시키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며 점진적으로 ‘제2금융권’을 은행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3) 직접적으로 관계법령에 대한 개폐를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입법조치를 수반하여야 되는 사항들도 많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을 유형별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자금·금융 분야에서는 ‘판매상품담보부 어음할인제’ 및 무보증회사채의 발행허용 방안 등이 주목할만하다. 의무대출비율의 상향조정도 자주

3) 성광원, “경제정의실현을 위한 법제개혁방안” 토론판지, 한국법제연구원, 제4회 법제세미나『신한국의 국정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방향』(1993.4.28). 이 입장에서는 ‘도급거래’와 ‘계열화’를 ‘경제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가능케 하는’ 동일개념으로 파악한다.

거론되고 있다.

② 구조고도화 분야에서는 자동화협력대학 지정, 업종별 전문화단지 조성, 개방적 계열구조에로의 전환 및 업종별 공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③ 거래의 공정화·활성화 분야에서는 거래의 공정과 관련하여 도급거래위원회의 설치, 업종별 표준계약서 강제 및 제3자 가격결정방식 채택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집배송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 및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수출승인제 완화, 무역업허가면제범위 확대, 관세환급절차 개선 및 관세징수유예제도의 한시적 부활 등 파격적인 절차간소화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동상표제의 활성화 및 '변형된 표지어음'제도의 시행방안도 중소업체들의 판매강화를 뒷받침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④ 경영합리화 분야에서는 생산원가를 인하시킬 의도 아래 법정공휴일 수 및 연월차휴가일수를 축소하자는 방안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며 노조운동의 과행을 막기 위하여 복수노조설립과 노조의 정치참여를 계속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수입부품의 국산화의무개발제, 기술개발보хи제, 산·학·연의 기술 '컨조지움' 설립, '벤처 캐피탈'의 육성, 계열화예시제, 기술알선 및 사후관리제 등과 같이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개선방안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창업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창업 이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인력난해소와 관련하여서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퇴직예고제, 스카웃부담금제, 변형근로시간제, 고용보험제 등이 그것이다. 상공부·노동부·법무부간의 의견조정이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연수제'는 대체적으로 기존제도의 연장·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⑤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행정감독체제에서 행정지도체제에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으며 부처간 할거주의의 극복방안이 주요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또한 기업고충처리심판제를 시행하고 행정규제범위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기업관계 행정절차규정들에 있어서 중복·모순·비현실적 기준 등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세절차의 적정화도 같은 맥락에서 대두되고 있다. 환

경오염규제면에서는 조건부특례를 인정하자는 방안이 이색적이다. 공장입지와 관련된 방안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간 겪은 애로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중 특기할만한 것은 공장입지자유지대를 설치하고 영구임대공단·특별전용공단·업종별전문화단지·부품별 협동화단지 등 중소기업만을 위한 일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공장입지자유지대내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 실시방안은 절차중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정비방안은 기존기구의 기능보완보다 새로운 기구의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⑥ 정책의 차별화 분야에서는 우선 소기업 육성을 위해 소기업수급협의체 및 재하도급협의체를 조직하고 과세절차를 특별히 간소화하는 한편 조세자동감면방식을 채택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소기업 공장입지를 위해 수도권정비사업상 예외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방대학과의 산학협동체제의 구축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방중소기업의 인허가를 지방정부에 귀속시키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어음·수표의 부도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우수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압박 때문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도처리유예담보보증제' 및 '손실보전제도' 등의 실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2. 각계 의견에 대한 평가

(1) 복잡다양한 의견의 제시

중소기업대책은 실제 경제영역 전반에 걸치기 때문에 법제개선에 관한 의견 역시 복잡다양할 수밖에 없다. 앞에서 제시된 각종 입법의견들은 바로 이러한 복잡성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 문제는 의견들의 복잡성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의견들을 어떻게 법제에 수용하느냐 하는 방법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개선의견을 모두 개별법령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의욕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중소기업 법제의 복잡다양한 체계 자체가 정책집행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인식부족

현재의 개선의견들은 각종 정책들의 제도화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입법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임기응변적인 단기대책들에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경영애로가 '과거의 방만한 경영'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음을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의 한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즉, 기업경영은 근본적으로 경쟁의 질서 속에서 자기책임의 원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 철저하지 못하였고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점들을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대다수의 입법의견들이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개진하면서 공통적으로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업분야확보·기술개발·인력개발·정보관리·공장 설립·창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공익목적을 위한 규제강화분야

한편 소수의견이 돌보이는 경우도 있다. 한결같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환경·보건·의료·소비자보호·경제력집중완화 등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익을 목적으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원배분의 최적화 내지 균형발전의 도모라는 관점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입법의견 취약분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의견이 취약한 분야들이 있다. 예컨대, 전문화·계열화, 사업분야의 확보·전환 그리고 협동화·조직화는 바로 전체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역할분담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영역인데도 상대적으로 입법의견이 희소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 관한 입법의견들이 중소기업의 문제를 전체경제와의 관련속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주로 자금공급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증거라고 판단

된다. 한편 투자규모의 적정화·정보관리·현지법인 등에 관한 입법의견들이 반영하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자들이 계량화·정보화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IV. 입법 방향

1. 법체계상의 문제점 조정

현행 중소기업법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1)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중소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7개의 진흥관계법⁴⁾ 및 (2) 원활한 자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4개의 금융관계법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들은 중소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상공자원부와 재무부의 각과별로 분산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산형 입법체계는 일견 경제상황에 따른 개별입법조치가 용이하고 법집행에 관한 단위부서의 책임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체계는 장점 못지 않게 폐단도 많다. 현행 중소기업법제는 '국가경제 전체의 조정'과 '법집행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법의 입안과 집행의 편의를 위해 관계부처의 각과가 1개 또는 수개의 법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과별입법관행]. 또한 입법연혁상 정부는 그때 그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입법조치를 취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른 관계법들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입법기술적 조정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자금·기술·인력·공정거래' 등 '서로 유기적으로 얹혀 있는' 운용요소들이 여러 법령들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 주요 개념정의들이 불분명하게

4) 중소기업진흥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소기업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중소기업은행법/국민은행법/신용보증기금법/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동일개념에 대한 상위법의 용례와 하위법의 용례가 서로 부합되지 아니한다.⁶⁾ 그런가하면 ‘구조’라는 개념이 특정 중소기업 자체의 ‘재무·경영·생산’의 구조를 의미하는지 전체 ‘산업’구조까지 포함하는지 여하가 불분명하다(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 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조, 제7조 참조). 나아가 ‘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경영안정’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계열화·전문화와 혼동되어 있다(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 2 내지 제8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제5조 참조).

한편 현재와 같은 지원 일변도의 입법체계는 개방경제체제에서는 조만간 종언을 고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개별법률들의 목적과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국제기구 또는 교역상대국들로부터 법개정압력을 직접적으로 받기 쉽다. 또한 현재의 중소기업법제는 경우에 따라 중첩과 흡결을 동시에 안고 있다. 즉,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유사한 성질의 자금공급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례⁷⁾ 또는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재원의 확충 없이 서로 유사한 자금공급을 취급하고 있는 사례⁸⁾ 등은 금융법규의 중복이다. 또 생산직 인력난의 해소와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해외유입인력에 관한 부처간 갈등은 법규흡결의 결과이다.⁹⁾

-
- 6)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계열화’개념은 전문화 및 분업화의 개념을 포함하는데(제18조),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계열화’ 개념은 ‘상호분업적 협력관계’만을 포함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7) 예컨대, 중소기업은행에서 동시에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책별 특별지원자금’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나름대로의 차별화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구분짓기 어렵다.
 - 8) 예컨대, 상업은행에서 취급하는 ‘기술개발자금’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산업기술향상자금’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자금 공급기회의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창구의 분산화’ 현상 때문에 오히려 ‘집중지원’을 곤란하게 한다.
 - 9) 이른바 ‘3D현상’ 때문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상공자원부는 인건비가 저렴한 아시아인 및 한국계 중국인들의 인력수입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노동부는 국내 근로자들의 입지를 고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도적이지만 출입국관리 및 범죄대책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해외

신정부와 신경제5개년계획은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 단일육성법 제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법은 그 적용범위와 내용이 간명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 현행 중소기업법제는 '간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다.

첫째, 법체계의 방만함으로 인하여 경제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의 현행 중소기업법제는 여러가지 명분으로 포장하더라도 그 실질은 종래 계획경제 내지 중앙관리경제의 유산이다. 국가의 경제적 개입과 조정이 현저한 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도구로서의 법'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 경제에 관한 일관성 있고 유기적인 총괄조정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만한 법체계는 그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법을 집행하는 관료기구를 비대화시킴으로써 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개입을 증대시킨다.

둘째, 실물경제 중심이 아니라 법집행기구 위주로 짜여져 있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셈이다. 유기적인 하부구조가 부단하게 변모하고 있는데 상부구조는 구태를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는 관념만 세간에 맴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법체계는 여전히 '모자이크식 수선'에 머물고 있다. 현행 법체계의 출발은 실물경제의 흐름에 맞추어졌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단히 체제혁신을 도모하지 아니한 채 옥상옥을 구축함으로써 이제는 법집행기구가 실물경제의 흐름에 적절히 이바지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셋째,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방만한 조직의 경제적 개혁의 출발점은 재정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인데 우리 중소기업법제상의 자금·금융 창구는 너무 다종다원화되어 있다. 어차피 한정된 자원에 창구만 많이 만든다고

인력수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때문에 정당화되어 왔다면 중소기업관련법규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여 가용자원이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규모의 비경제'로 인하여 운영시간과 비용만 증대될 뿐이다.

이상의 여러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중소기업법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법집행기구의 효율 및 적정규모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체계상 일대 혁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1단계 조치로서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이하 진흥관계 7개법들을 단일화시키고 중소기업금융관계 4개법들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특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단일화된 종합육성법에서 종래의 고전적 기업법제에 대한 여러가지 특칙들을 - 조세제도, 유통기구, 노사관계, 수출입절차 및 행정규제 등에 대한 특칙까지 포함하여 - 명료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제단일화는 법집행기구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 및 경제 전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총괄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행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각계에서 희망하는 입법의 견들은 너무 많은 요구와 광범위한 입법조치들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단일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것들을 수용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계를 위한 입법적 해결은 고사하고 종래 법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만 더욱 깊어질 것이다.

3.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구 및 제도의 창설 및 보완

법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법은 오히려 사회경제 발전에 장애가 된다. 즉, 불필요한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입법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를 적절하게 창설할 것이 요청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법령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여 왔지만 혁신과 실험정신이 부족하였다.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정세는 종래와 같은 입법태도로 이에 대처하기 힘들며, 따라서 기존의 법집행기구에 대한 근본적 혁신과 새로운 제도들의 창설이 요청된다.

우선 법집행기구내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정부 부처간의 획적인 연관관계의 증대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내지 경쟁력 강화가 국가정책의 우선 과제로 설정된다면 이를

상공자원부의 소관으로만 들려서는 아니된다. 재무부가 대기업 위주의 여신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총무처의 행정규제완화계획이 대기업을 포함하는 무차별조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부의 인력정책이 중소기업과 무관하게 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경제기획원이 경제구조조정에 힘쓰지 아니한 채 상공자원부만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서도 아니된다. 재무부가 조세징수 목표를 고집하여서는 아니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국고이외의 목적에 남용하여서도 아니될 것이다. 환경처는 중소기업에 대해 환경기준의 신축적 운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종합조정기구의 창설이 필수적이다. 현재처럼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상공자원부가 간사역할을 맡고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부의 의견처럼 '중소기업청'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처와의 획적 협력관계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총리 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질적인 행정위원회로서의 '중소기업위원회'의 설치방안이 검토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부문의 경우 새로운 담보제도의 창안 내지 기존 담보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신용대출을 확대시켜 봐야 한계가 있고 금융자율화를 표방하면서 해당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험을 인수하게 지도하는 것도 모순되기 때문에 담보제도의 획기적 보완이 요청된다. 부동산·등록동산·공장 등에 관한 기존의 담보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담보방법을 보완하고, 해당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그 위험을 정부투자기관 또는 동업조합 등이 인수함으로써 신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이를 담보로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소기업 내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충

중소기업들중 경쟁력이 강한 이른바 '중견'기업들에 대하여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전체 중소기업체의 과반수인 소기업과, 전체 중소기업의 약 4할을 차지하는 지방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

르다. 중소기업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소규모기업일수록 지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¹⁰⁾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금융·기술·정보 등의 혜택에 있어서 대기업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은 그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법제는 바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하여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중소기업법제는 '소'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들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지원은 이를테면 '특례 중의 특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족적 규범구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원칙적으로 소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중견'기업들에 대하여는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의 한시적 지원을 예정하는 태도가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5.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 보장

법적안정성 내지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은 자본주의 발전의 근간이었다. 중소기업법제 역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중소기업정책은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변천되었다기보다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틈바구니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왔다. 향후 중소기업정책이 활성화되더라도 주의를 요하는 점은 기회주의적이고 편의지향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자원이 배분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일관된 원칙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0) 제조업의 경우 1988년 현재 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56.9%(중기업 40.9%)에 이르고 있고, 종업원 수는 11.1%(중기업 46.7%), 부가가치액은 5.9%(중기업 3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에 있어 1989년 현재 지방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체 수의 40.9%에 이르고 있고, 종업원 수는 44.8%, 생산액은 44%, 부가가치액은 43.7%를 차지하고 있다(경제기획원, 『1988년 산업센서스보고서』(1990); 통계청, 『1989년 광공업통계조사보고』(1991)).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해당 항목
憲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業·經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채·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林·水產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境·保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院·法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민사법, 제9권9형사법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3. 3. 16 ~ 1993. 4. 15)

◎ 憲政	58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統一·外交·國防	58
○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병역법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內務·地方行政	59
○ 소방법시행령 개정의견	
○ 외무공무원법 개정의견	
○ 행정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社會·文化·教育	60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교육법 개정의견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전교조관련 입법의견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한국교육방송원법(가칭) 제정의견	
◎ 產業·經濟	64
○ 관세법 개정의견	
○ 기술대학설립관련 입법의견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산업안전보전법시행령 개정의견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지방세법 개정의견	
○ 첨단기술사업화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農林·水產	66
○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관련 입법의견	
○ 조합장선거관련 입법의견	
◎ 建 設	67
○ 간선도로건설법(가칭) 제정의견	
○ 건설업법 개정의견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아파트관리관련법 개정의견	
○ 지역균형개발법(가칭) 제정의견	
◎ 科學技術·交通·遞信	69
○ 통신비밀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環境·保健	70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의료사고분쟁조정법(가칭) 제정의견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法院·法務	72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관련 입법의견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3. 3. 16 ~ 1993. 4. 15)

◎ 憲政

○ 선거관계법 개정의견

- 여야 재정립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대상법률로 정치자금법·정당법·국회법을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법개정을 통하여 정치비용절감, 고른 정치자금 배분, 국회운영에서의 여야동등발언권 확보 등을 지향하도록 함. 정치비용을 낮추는 문제는 주로 행태와 관련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선거법·정당법을 고쳐야 할 것이고, 정치자금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인상·후원회제도 활성화·기탁금제도 개선 등으로 야당에게도 양성정치자금이 수월히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운영과정에서 야당측의 발언권을 충분히 인정하고 건전한 정책대안은 적극 수용하도록 할 방침임(국회 정치관계법특위).
 - 같은 나라의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자치단체장선거법이 각각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통합선거법」을 제정해야 하며,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구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 대신 광역자치단체를 한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하고 유급선거운동원제를 폐지해야 할 것임(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993.4.14).
- : 서울 93.4.2., 4면; 서울 93.4.14., 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제6호(66~67면) 참조

◎ 統一·外交·國防

○ 남북한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되면 현행의 각종 규제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류협력의 장애물로 될 것으로 예상되어 ① 대북

접촉승인제를 폐지해 민간인의 자유접촉을 허용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북한에 대한 투자도 소액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② 교류협력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업무를 투자는 재무부가, 물자교류는 상공자원부가 맡도록 하는 등 해당 결제부처로 이관하기로 함(정부).

: 한겨레 93.4.14., 1면

○ 병역법 및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병역관련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취지하에 병역대상자는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형평성을 위해서 ① 신체장애에 따른 면제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대상자는 현역복무·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하며, ② 병역대상자가 투입될 사회봉사분야는 i) 치안보조(방범) ii) 소방 iii) 산림감시 iv) 공해방지감시요원 및 기존의 병역특례대상을 포함하고, ③ 사회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육군·해병대 26개월, 해·공군 30개월)에 준해 결정하되 노동강도 등 분야별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며, ④ 병역처분을 종전의 현역(특례보충역 포함)·면제 등 2개등급에서 현역·사회봉사·면제 등 3개등급으로 재조정하고 이에 따른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함(국방부).

: 세계 93.3.31., 1면; 한국 93.3.31, 1면; 경향 93.3.31., 1면; 국민 93.3.31., 19면

◎ 内務·地方行政

○ 소방법시행령 개정의견

- 바닥면적 6백m²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관의 현장검사를 없애고 대신 건축물 설계·감리자에게 대행시켜 결과를 통보하면 소방서장이 준공동의를 내주며, 소방관의 현장검사 대상 신축건물의 상한선을 아예 없앨 것을 검토중임(내무부).

- 이에 대해 소방시설 완공여부 확인을 설계·감리자에게 맡긴다고는 하나 이들 역시 건축주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만큼 소방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소방관의 엄정한

확인감시 체계를 그대로 살리되 다만 화재가 나더라도 대피가 쉬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일부 건물 등에 한해 건축주의 자율에 맡기
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소방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한겨례 93.3.25., 14면

○ 외무공무원법 개정의견

- 현재 역피라미드형태를 취하고 있는 외무부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현행 외무공무원법 가운데 특2급 대사제도를 폐지
하여 특2급정원을 1급 이하 외무공무원들에게 하향배분하고 특임
공관장제도는 법규정에 “1회 3년에 한한다”는 조항을 삽입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을 검토중임(외무부).

: 조선 93.4.14., 2면

○ 행정정보공개법(가칭) 제정의견

- 종래 정부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행정관행을 통하여 정보를 독점한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정보를 치부수단으로 삼은 테에서 부정
축재문제가 시작된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함께 밀실행정의
탈피차원에서 「행정정보공개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오석홍 서
울대교수).
- 불법적 수단으로 행정정보를 획득하려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
기 위해 「행정정보공개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함(박재창 숙명여대
교수).

: 세계 93.4.6., 8면; 한겨례 93.4.13., 12면; 세계 93.4.13.,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42면), 제2호(44면), 제6호(72~
73면) 참조

◎ 社會 · 文化 · 教育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의견

- 중 · 고교생의 도피성유학을 억제키 위해 중 · 고교를 중퇴한 후 해
외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남학생이 병역연기를 받아 유학을 가
려면 고교졸업후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

로 한 「국외유학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함(교육부).

: 세계 93.3.17., 21면

○ 교육법 개정의견

- 임기제에 묶여 건강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의원면직만이 가능했던 일선 학교장들에게 명예퇴직의 길을 터줘 일선교원의 인사체증을 풀 수 있도록 할 계획임(교육부).

: 서울 93.3.24., 22면

○ 노동관계법 개정의견

- 문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① 체신·철도공무원에 한해 현장직급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무원 노조가입의 범위를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의 경우 사무관 이상 보직을 가진 자를 제외한 6급이하 사무직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되, 안보 및 치안상의 문제점을 감안,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은 전원 제외하고, ② 현행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정치활동금지조항도 삭제키로 하되 복수노조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③ 제3자 개입금지조항은 노조측에서 노사분규와 관련해 변호사 또는 노사관계전문연구기관 등 중립적기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④ 토요일 4시간 근무제를 한주는 쉬되 한주는 8시간근무제로 하는 변형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파트타임고용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임(민자당).

: 서울 93.4.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제2호(45면), 제5호(50면), 제6호(76~77면)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예외'를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100분의 2 이상 고용하도록 하되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에 대하여는 고용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등 장애인단체와 고용촉진공단은 이러한 예외규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장애인이라도 사실상 국가공무원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 고용을 막는 법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개정을 주장함.

: 서울 93.3.28., 16면

○ 전교조관련법 입법의견

- 전교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교조합법화를 위한 관계법령(국가공무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의 개정과 국회에서의 특별법 「해직교원복직과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통한 해직교사·교수의 전원복직이 있어야 함(전교조).
- 현행법상 복직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중인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일 뿐이어서 해직교사 복직은 불가능하며 단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의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의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원용해 신규특채할 수도 있을 것임(교육부).
- 현재 진행중인 교육부와 전교조간의 대화에서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는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라나, 현실적으로 과연이나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공무원법 등 관련법규상 복직에 따른 현실적 제약이 적지 않아서 당으로서는 일선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막어야 하는 만큼 관련법규에 앞서는 복직관련 특별법은 제정할 수 없는 입장임(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

: 한겨레 93.4.9., 1면 3면; 중앙 93.4.10., 2면; 조선 93.4.11., 2면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사이비언론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미창간 및 발행중단 간행물에 대한 등록말소의 근거마련과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할 계획임(공보처).
- 정부가 사이비언론 척결을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은 사이비언론의 척결이라는 측

면에서만 생각하면 이같은 법개정은 일단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언론자유창달을 위해 제정된 현행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관한법률」에 새롭게 일종의 제한규정을 두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발상이라 할 수 없음. 언론의 폐해는 사안별로 처리할 것이지 법률규정으로 등록과 발행에 원천적인 제한을 두게 된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부 언론의 폐권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것임(세계일보 사설).

: 서울 93.4.13., 5면; 세계 93.4.13., 3면; 중앙 93.4.13., 3면; 조선 93.4.14., 2면; 한겨레 93.4.14., 1면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오는 '93년으로 예정된 외국정기간행물수입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국내의 수입업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수입업체간의 공정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정기간행물수입제도를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문화체육부).
- : 경향 93.4.15, 2면; 세계 93.4.15., 21면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

- 사설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재량범위를 확대하고 관련규정을 바꿔 국제화시대에 대비, 학원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높히도록 함(교육부).
- : 서울 93.3.24., 22면

○ 한국교육방송원법(가칭) 제정의견

-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교육방송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키 위해 교육방송원의 운영 및 사업자금충당을 위한 기금 설치, 정부예산에서의 출연금 교부,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교육방송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교육방송원법」(안)을 마련키로 함(교육부).
- : 서울 93.3.24., 22면

◎ 產業·經濟

○ 관세법 개정의견

- 수출입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가피해방지를 위하여 ① 제조전 수출신고를 허용하여 수출물품이 제조되는 즉시 수출할 수 있고 수입품도 하역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② 조정·긴급·계절관세 등 탄력관세의 부과상한을 철폐하여 국내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며, ③ UR농산물협상타결시 수입자유화되는 천연꿀, 잣, 대추 등 1백51개 농산물의 국내 생산자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 대신 국내의 가격차만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완충조항(safe-guard clause)을 새로이 명문화하기로 함(재무부).

: 세계 93.3.31.,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제4호(33~34면), 제6호(79면) 참조

○ 기술대학설립관련 입법의견

-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기술대학의 설립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법개정을 통한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내년에 시범적으로 2~3개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토록 할 계획임(상공부).

: 한겨레 93.3.25., 6면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

- 무역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수출입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① 무역업 자격요건을 완화해 갑류무역업의 경우 법인의 자본금 요건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개인의 예금잔고 요건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을류무역업의 범위에 농업 및 임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추가하며, ② 일정기간동안 동일물품을 수출할 때 포괄적으로 수출승인을 내주고 1만달러 이하 소액수출에 대해 수출승인을 면제키로 하는 등 수출입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며, ③ 무역업

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출입실적 기준을 현재의 연간 50만 달러에서 5만달러로 완화하며, ④ 무역업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매년 효력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대신 2년마다 무역업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등록기관도 현행 시·도에서 무역협회로 이관함(상공부).

: 한겨례 93.4.7., 6면; 세계 93.4.7., 7면

○ 산업안전보전법시행령 개정안

- 농업·어업·수렵업의 경우 지금까지 산업안전보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을 농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②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해 원청업계에 대해 하청업체의 공사현장에 적정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③ 개별 하도급 사업장의 규모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규모에 못 미치더라도 전체 작업현장의 노동자 수나 공사금액이 해당규모 이상일 경우 원청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노동부).

: 한겨례 93.4.7., 14면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의견

- 쓰레기 감축과 자원 재활용촉진을 위해 ①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처리비용을 물리는 폐기물처리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면도기, 칫솔 등 일회용품과 부동액, 담배 등 12개 품목(18종)에 일정 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② 기존의 폐기물처리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중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용기, 살충제용기, 합성수지 등 8종을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전환하고 냉장고, 에어컨 등을 예치금대상에 추가하고, ③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 등을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연면적 3백평상의 건물 및 토지 소유주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를 설치해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게 하며, ④ 이밖에 제지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등을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해 폐자원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하도록

록 하고 각급 공공기관은 재활용화장지, 재생노트 등 재활용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함(환경처).

: 국민 93.3.31., 19면; 동아 93.3.31., 22면; 한국 93.4.1., 29면; 경향 93.4.1., 22면; 세계 93.4.1., 21면; 서울 93.4.1., 22면

○ 증권거래법 개정의견

- 일반투자자의 상장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200조를 개정하여 제한을 철폐하기로 결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임(재무부).

: 서울 93.4.5., 9면

○ 지방세법 개정의견

- 자동차를 산 사람이 결함있는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함(경제기획원,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1993.4.1.).

: 경향 93.4.2., 7면

○ 첨단기술사업화촉진법(가칭) 제정의견

- 대기업집단의 과당경쟁과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를 자제하고 비교우위에 입각한 업종전문화에 주력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반도체, 자동차, 환경설비, 자동화·정보화 기기 등 성장잠재력이 큰 주요전략품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충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첨단기술사업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임(상공자원부).

: 국민 93.4.13., 7면

◎ 農林·水產

○ 수입농산물에 대한 녹색신고제관련 입법의견

-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시 당해 농산물의 재배·보관·운송단계에서 사용한 농약의 명칭 및 사용시기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계획임(경제기획원,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1993.4.1.).

: 경향 93.4.2., 7면

○ 조합장선거관련 입법의견

- 농림수산부는 과열·타락현상을 빚고 있는 농·수·축협 등의 조합장선거를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꿀 방침임. 농어촌에서 조합장선거를 들러싸고 불법타락행위가 성행할 경우 총선·대선 등 다른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금융·판매 등 경제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의 운영에 비전문가나 정치성향이 있는 인물이 참여해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의 선거제 도 등을 조사해 우리 실정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 정기국회에서 관계법규를 고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농림수산부).

: 국민 93.3.17., 18면

◎ 建 設

○ 간선도로건설법(가칭) 제정의견

- 정부는 2020년까지 45조9천4백억원을 들여 고속도로 5천94km, 고규격국도(4차선 이상 고속화국도) 1천26km 등 6천1백20km의 간선도로망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개발장기간선도로건설법(가칭)」을 제정해 장기 간선도로망의 예정노선을 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함(건설부).

: 중앙 93.3.26., 21면

○ 건설업법 개정의견

- 현행 건설업법은 이미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고의·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했거나 공중에게 위험을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번 구포역사고를 계기로 다시 제기됨.

： 조선 93.3.30., 11면; 세계 93.3.30., 7면; 서울 93.3.30., 21면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견

- ①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지 2년이 넘도록 이용·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대한 각종 세금을 중과세하여 종합토지세의 경우 최고세율인 5%(현재 사치성 별장 등에 적용)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도 7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② 유휴지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토이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유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관할 시장·도지사의 재량으로 유휴지 지정을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하며, ③ 유휴지 강제매수 조항을 강화하여 유휴지로 지정된 후 3개월이내에 개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치 않거나 계획서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시지가로 무조건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임(건설부).

： 한국 93.3.19., 7면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의견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규제가 엄격했던 유원지에 대한 행정규제를 도시공원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① 유원지 안에서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대수선, 재축, 증축,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벌채 및 재식 등을 허용하고, ② 현재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유원지내 도로·수도관·통신시설 등 주민생활 관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③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는 유원지는 이 조처와는 별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상의 규제를 계속할 방침임(건설부).

： 한겨례 93.4.7., 7면

○ 아파트관리관련법 개정의견

-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분쟁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등 아파트관리관련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파트 관리관련법규의 개정을 강력히 제기함(서울YMCA, 「시민중계실주

최 토론회」, 1993. 3.25).

-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의 경우 장기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율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관리비의 4~20%로 막연히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탁회사가 형식적으로 최하선인 4%만을 이에 충당하고 있어, 이 비율로는 실제 장기수선계획상 소요되는 금액의 10~30%만을 충족할 수 있을 뿐임(고철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 아파트관리 주요법규인 공동주택관리령은 공인회계사를 통한 형식적인 회계수치 감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관리비 비목별 과다이유와 위장·가공·증명유무, 입찰용역의 부정비리 등을 전혀 밝힐 수 없는 허점을 지니고 있음(심현천 아파트생활시민모임 공동대표).
- 관련법규를 입주자를 위한 방향으로 정비하고 주택부·주택청 등 주택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함(구본성 서민주택연구소장).

: 서울 93.3.27., 16면

○ 지역균형개발법(가칭) 제정의견

-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전심의만으로는 인구유발시설 건설에 따른 수도권인구집중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지역에 새로 건립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중과세하고, 이러한 과밀부담금과 차관을 재원으로 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꾀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전국 6대도시지역에 대해서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임(건설부).

: 세계 93.3.27., 7면

○ 科學技術·交通·遞信

○ 통신비밀보호법(가칭) 제정의견

- 지금까지 관행처럼 행해져온 우편검열과 감청은 유괴, 마약사범 등

특정 범죄의 수사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목적 외에 검열·감청을 할 경우 엄중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키로 함(체신부).

: 서울 93.4.3., 1면

◎ 環境·保健

○ 노인건강관리법(가칭) 제정의견

-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96년까지 보건소가 지역 노인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노인건강관리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임(보건사회부).

: 서울 93.3.30., 2면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견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보육아동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확대공급을 위해 ① 개인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이나 사업주가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등 아동보육 시설의 경우,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종전에는 시설종사자(단순노무자 제외)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체직원 중 노무자는 물론, 의사·약사·간호(조무)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영양사·위생사 등 보건관련 자격증소지자까지도 제외한 뒤 남는 규모의 3분의 1 이상 만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면 되도록 완화함(보사부).

: 국민 93.4.5., 9면; 조선 93.4.6., 3면; 한국 93.4.6., 9면; 경향 93.4.6., 22면; 세계 93.4.6., 21면

○ 식품위생법 개정의견

- 올 상반기 중 생수시판을 허용하기 위해 이에 따른 시설 및 규격기준과 수질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하수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해 생수시판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여 이것으로 수질조사단의 조사비용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하수채취때 철저한 심사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지하수오염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임(보사부).

: 서울 93.3.30., 2면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

-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특정공산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아파트에 보편화되어 있는 음식물찌꺼기분쇄기(디스포저) 등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합성세제 등도 규제에 포함할 계획임(환경처).

: 서울 93.4.14., 22면

○ 의료법 개정 의견

- 현재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의사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면허정지처분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과태료처분으로 대폭 완화하고, 의료법위반으로 적발된 의사에게 부과하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의 하한선(최소 1개월이상)을 폐지키로 하며,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② 비도덕적 진료 행위, ③ 허위 · 과대광고행위, ④ 과잉진료행위 등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1개월 미만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보사부).

: 세계 93.3.24., 21면

○ 의료사고분쟁조정법(가칭) 제정 의견

- 의료사고의 분쟁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료사고분쟁조정법(가칭)」을 제정키로 함(경제기획원,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1993.4.1).

: 경향 93.4.2., 7면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 의견

- ① 면적 3천평이상의 쓰레기매립지를 건설할 때는 자원위원회가 결정하는 매립지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도로 · 상하수도 · 구민회관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하는 등 주민지원을 의무화 하며, ②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은 매립지 설치기관의 출

연금 및 쓰레기반입수수료 등으로 마련하고 관련기관장 및 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에서 재원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③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1만t 이상이거나 부지가 4만5천평 이상인 공단·공장을 건설할 경우 자체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간당 처리능력 2백t 미만의 소각시설 및 하루처리능력 30t미만의 중간처리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④ 이와 함께 현행 특정폐기물 가운데 유해성이 없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한편 특별관리가 필요한 동물성 잔재물 폐수처리오물 등을 지정일반폐기물로 규정하는 등 특정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조정 시행할 방침임(환경처).

: 국민 93.4.10., 18면; 서울 93.4.11.,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6호(101면) 참조

◎ 法院 · 法務

○ 성폭력특별법(가칭) 제정의견

- 성폭력특별법은 민간단체의 오랜 현장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계가 만든 법안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여성계가 주장하고 있는 ① 성폭력범죄의 법적 개념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 ② 고소기간 폐지, ③ 친고죄를 없애되 일부조항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④ 성폭력대책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조항과 성폭력대책 민간사회단체의 활성화 보장, 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성폭력특별위원회(가칭)' 설치, 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가해자교화시설 설치, ⑦ 성폭력범죄의 관할을 가정법원에 두고 조사관제도와 재정신청제도 도입, ⑧ 피해자 대리인제도, 비공개재판청구권 등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제도 도입, ⑨ 성폭력을 부추기는 음란물의 제조, 판매 등에 대한 법적 제재, ⑩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다양한 성희롱 행

위에 대한 처벌 등은 반드시 규정해야 함. 한편 민자당안의 '정조에 관한 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여성의 정조유린여부'만을 중요시하게 되어 여성을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지켜야 할 정조'만을 지닌 대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정조이데올로기의 악순환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을 그대로 인정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자살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치닫게 해 성폭력을 개인의 불행으로 다루게 만들 우려가 있음. 민간단체활동규정에 있어서도 민자당안 중의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설치(제4조)', '허가의 취소(제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제14조)', '과태료(제38조 2항)' 등 조항들에 의한다면 법인만이 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유사명칭도 사용할 수 없어 최근 법인으로 등록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성폭력관련활동단체들이 불법단체로 전락하게 될 처지에 있으므로 규제가 아닌 지원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위, 『성폭력특별법 제정내용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1993.4.13)』).

: 한겨레 93.3.28., 8면; 국민 93.4.8., 2면; 93.4.9., 8면; 93.4.14., 8면

○ 소비자집단소송제도관련 입법의견

- 피해소비자가 다수일 경우 그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소비자도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계획임(경제기획원, 「'93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1993.4.1).

: 경향 93.4.2., 7면

Ⅱ. 최신법령 목록

(1993. 3. 16 ~ 1993. 4. 15)

공포번호	건명	공포연월일
조약 1169	1992년 국제사탕협정	1993. 4. 15
대통령령 13871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 3. 30
13872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령	1993. 3. 30
13873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불베어링에 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정	1993. 4. 1
13874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 4. 1
13875	대학학생정원령중개정령	1993. 4. 2
13876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개정령	1993. 4. 9
13877	행정조정실직제중개정령	1993. 4. 9
13878	행정쇄신위원회규정	1993. 4. 9
13879	지방공기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3. 4. 10
재무부령 1918	수출검사법제3조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칙폐지령	1993. 4. 1
1919	주류의수출검사기준및검사방법에관한규칙폐지령	1993. 4. 1
법무부령 367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1993. 4. 1
368	외국인수용규칙개정령	1993. 4. 1
농림수산부령 1116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19
1117	국립수산진흥원어촌지도소및수산종묘배양장의명칭·위치및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 3. 22
상공자원부령 2	수출검사법제3조의규정에의한물품지정에관한규칙폐지령	1993. 4. 1
3	주류의수출검사기준및검사방법에관한규칙폐지령	1993. 4. 1
보건사회부령 903	국립검역소의명칭·위치및관할검역항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 4. 13

국내입법의견조사(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제 7 호

1993年 4月 28日 印刷

1993年 4月 30日 發行

發行人 李 世 薰
發行處 韓 國 法 制 研 究 院
印刷處 (株) 韓 國 科 技 產 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 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 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欲 2,000원

국내입법의견조사발간목록

호수	도서명	면수	발행일
제 1 호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72면	92. 7.29
제 2 호	간통죄의 존폐 및 낙태의 허용범위	68면	92. 8.31
제 3 호	환경문제 관련 입법의견	88면	92.10.29
제 4 호	성직자 과세논쟁	54면	92.11.30
제 5 호	남북통일을 위한 대처방안과 법적문제	74면	92.12.30
제 6 호	선불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120면	93. 3.25
제 7 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80면	93. 4.30
제 8 호	농지제도개선	근	간

